

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·대구영화학교 교육활동 협약서

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대구영화학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며, 상호 간의 유기적 연대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

양 기관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하고 지산학 연계를 통하여 학교현장과 교원양성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지원 및 교사 연수 지원,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교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실습, 교육봉사 및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제공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협약 당사자)

본 협약은 양기관을 협약 당사자로 한다.

제3조(협약내용)

양 기관이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가. 대구영화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
- 나. 대구영화학교 교직원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
- 다. 대구대학교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및 봉사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
- 라. 대구대학교 예비교사의 비교과 교육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
- 마. 양 기관의 교수·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바.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자원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
- 사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4조(협약의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효력)

가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해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나.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7월 4일

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

학장 백 상 수

백 상 수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대구영화학교

교장 최 정 옥

최 정 옥

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33